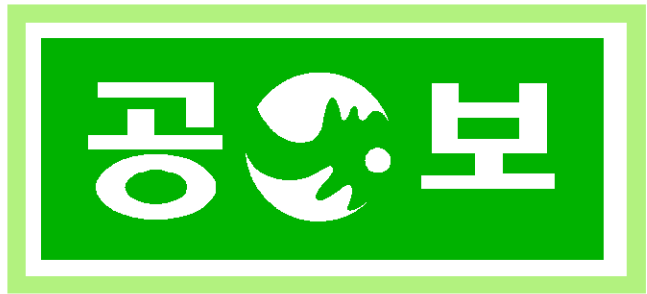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780 호 2012. 10. 29(월)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85호[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2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86호[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 7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56호[하천점 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57호[도로명주소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58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5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60호[도로명 고시] 1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810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18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 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을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로 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을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로 하고,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으로 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을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로 한다.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의 보수

부 서 별	총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합 계	102	42	27	5	8	2	4	56
기획홍보실								
총 무 과	10	10	5	4	0	1	0	
주민참여과								
회 계 과								
문화체육과	7	7	7					
도 서 관 과	7	7	7		0			
세 무 과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1	1	1					
환경미화과	57	1			1			56
건설방재과	6	2	1		1		4	
도시녹지과	2	2	2					
교통행정과	4	4	1		3			
건축주택과	2	2		1	1			
농수산과								
보 건 소								
농소2동	1	1	1					
농소3동	2	2	2					
효문동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총 계	경 비 청원경찰	단속감시청원경찰			
			계	그린벨트 단 속	과적차량 단 속	하천감시
합 계	11	3	8	4	2	2
기획홍보실						
총 무 과	2	2				
주민참여과						
회 계 과						
문화체육과						
도 서 관 과						
세 무 과	1	1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방재과	3		3		2	1
도시녹지과	3		3	3		
경제교통과						
건축주택과	1		1	1		
농 수 산 과	1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운용인력 보강
- 현행 인력배치에 맞게 정수표 일부 조정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관련 별표 중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조정

1. 정수 조정(천곡문화센터 인력보강)

부서명	직 종	감	현 정원	조정 정원	→	부서명	직 종	증	현 정원	조정 정원
도시녹지과	단순노무원	△1	3	2		농소3동	단순노무원	1	1	2

2. 직종 불부합 개선

【조정 전】

부서별	총계	단순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합계	102	40	27	1	10	2	6	56
총무과	10	8	5		2	1	2	
도서관과	7	7	6		1			
교통행정과	4	4	2		2			

【조정 후】

부서별	총계	단순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합계	102	42	27	5	8	2	4	56
					

총무과	10	<u>10</u>	5	<u>4</u>	<u>0</u>	1	<u>0</u>
도서관과	7	7	<u>7</u>		<u>0</u>		
교통행정과	4	4	<u>1</u>		<u>3</u>		

Ⅲ. 정원 운용 : 113명 → 113명 (정원 증원없음)

【조정 전】

구 분	총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정 원	113	40	6	56	11

【조정 후】

구 분	총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정 원	113	42	4	56	1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 186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명기된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과 승진, 전보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고 구간 전보, 교육대상자 선발 등 현재 시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동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과 내용이 중복된 비효율적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폐지

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2-15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박 근 규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101동 3202호							
점용위치	어물동 1278, 산155-1, 943번지		하 천 명	금 천				
점용목적	영농을 위한 하천공작물설치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331	331		
점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영 구 		2012. 10. 29. ~ 2013. 10. 28.					
하천공사의 명칭	교량 설치공사		하천공사 목적	영농을 위한 교량 설치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지와 동일		공시기간	2012. 10. 29. ~ 2013. 10. 28.				
공사위치	어물동 1278번지 외 2필지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내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하천외정지	
	북구	어물동	1278	천	2,883	158		국(국토해양부)
			산155-1	천	1,299	153		국(농림수산부)
			943	답	2,060	16	4	박근규
계					327	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157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 북구 진장7길 3-10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0.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288 2-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7길 3-10(진장동)	2012-10-29	옛시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관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299-10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길 18(영포동)	2012-10-29	신선일대가 삼포개항 당시 새장터(소금과는상)로 사용하여 서장터로 도로명 부여	2004-01-05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84-2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1(호계동)	2012-10-29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2009-08-20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2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로 52-8(진장동)	2012-10-29	진장유동간지의 유통간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	2009-01-23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2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로 52-12(진장동)	2012-10-29	진장유동간지의 유통간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	2009-01-23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18 9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27-1(진장동)	2012-10-29	옛시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58 1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5길 5-5(명촌동)	2012-10-29	옛시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01-05	
8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266 2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121(천곡동)	2012 10 29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을 사용하였으며, 천곡 등 진제지역의 남쪽에 위치하여 두루명을 부여	2008 03 1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158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창좌1길 15외 1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0.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례동 4-2	울산광역시 북구 황포1길 15	울산광역시 북구 황포1길 21-10(사례동)	2012-10-29	확대부여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원지구 106B 4-2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3길 45-1(명촌동)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 45-1(명촌동) (명촌13길 45-1(명촌동))	2012-10-29	차도부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1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7길 49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0.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년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정지7길 49	울산광역시 북구 정지동 28	2012-10-29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2길 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98-1	2012-10-29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160호

도 로 명 고 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설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 시 일 : 2012. 10. 29.
- 고시방법 : 공보게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 도로명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일련 번호	도로구간		연장	폭	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시점	종점				
1	산하동 713-3	산하동 산191-8	322	8	산음3길	기존 자연마을인 산음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명 부여 도면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 조서

연번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부 위 (n)	기초 위계 (n)	기초 간격 (n)	기초번호		부여(신설, 변경)사유	고시일
			기점	종점					시작	끝		
1	신규 부여	신용3길	산하동 713-3	산하동 산191-8	322	8	길	20	1	84	기존 자연마을인 신용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2012-10-2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81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북구 당사동 49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25.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0	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80번지 일원	179,340	-	179,340	'03. 12. 31 울고218호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72	중2-17	당사동 250-1	일반도로	당사금천지구	'05. 3. 24 울고 106호	'12. 2. 16 울고 24호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72	중2-17	당사동 250-1	일반도로	당사금천지구	'05. 3. 24 울고 106호	폭원확장

(2)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53호선	소로 2-A호선	• 도로 폭원 확장 (B=6→8m, L=72m)	• 당사금천지구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원 확장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변 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06	녹 지	경관녹지	북구 당사동 396번지 일원	2,520	감)45	2,475	'05. 3. 24 울고 106호	
변경	207	녹 지	경관녹지	북구 당사동 484번지 일원	860	감)15	845	'05. 3. 24 울고 106호	

(2)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206	녹 지	▪ 면적 감소 (A=2,520㎡→2,475㎡, 감45㎡)	▪ 도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207	녹 지	▪ 면적 감소 (A=860㎡→845㎡, 감15㎡)	▪ 도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북구청 도시녹지과

■ 공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